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일반사항	⑥ 이전 전 본사 소 재 지	⑦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⑧ 본사 이전 등기일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⑩ 연평균 인원()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⑪ 연평균 인원()명	
	⑫ 감면대상 소득	⑨ × {(⑪ ÷ ⑩)}	
	⑬ 감면세액	산출세액 (법 제62조 제4항 적용전)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 감면비율(100%,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⑩ 연평균 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⑩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습니다.
- "⑬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